

2015 평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303
----------	-----

제출년월일 : 2014. 04. 2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건변화 수용을 위한 도시공간 재구축 및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 수립

2. 주요골자

1)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2011년(통계 기준연도 2012년)
- 목표연도 : 2015년
- 계획기간 : 2011년 ~ 2015년(5년간)
- 위 치 : 평창군 일원
- 면 적 : 1,463.600km²(도시지역 : 15.945km², 비도시지역 : 1,447.655km²)
- 계획인구 : 57,000인(2020년 : 60,000인)

2) 주요변경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19건
 - 용도지구 결정(변경) 21건(신설 9건, 변경 8건, 폐지4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6건(폐지 6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440건(신설 162건, 변경 161건, 폐지 117건)
-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 각각부변경 등) 제외

3. 참고사항

○ 주민설명회 실시(총3회)

- 1차 설명회 : 2013. 05. 03 (1일간)

평창읍사무소, 진부면사무소, 대관령면사무소

- 2차 설명회 : 2013. 10. 11 (1일간)

용평면 장평리 금송회관

- 3차 설명회 : 2014. 03. 27 ~ 2014. 03. 28 (2일간)

평창읍사무소, 진부면사무소, 대관령면사무소,

용평면 장평리 금송회관

○ 주민공람·공고 : 2014. 03. 25 ~ 2014. 04. 14 (20일간)

- 일간신문(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국민일보) 게재 및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

- 총 38건의 공람 의견 접수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463,600,127	-	1,463,600,127	100.00	
도시 지역	합	계	증) 1,064,167	17,009,008	1.16	
	주 거 지 역	소	계	증) 638,949	4,719,010	0.32
		일 반 주 거 지 역	계	증) 570,167	4,444,133	0.31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계	증) 322,527	836,128	0.06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계	증) 247,640	3,608,005	0.25
		준 주 거 지 역	계	증) 68,782	274,877	0.02
		상 지 역	소	계	증) 28,341	519,226
	상 지 역	일 반 상 업 지 역	계	증) 28,341	510,356	0.03
		근 린 상 업 지 역	계	-	8,870	-
		녹 지 역	소	계	증) 396,877	11,770,772
	녹 지 역	보 전 녹 지 지 역	계	증) 274,197	1,072,597	0.07
		생 산 녹 지 지 역	계	-	871,694	0.06
		자 연 녹 지 지 역	계	증) 122,680	9,826,481	0.67
		합	계	감) 1,064,167	1,446,591,119	98.84
비 도시 지역	관 리 지 역	소	계	감) 1,063,714	355,875,455	24.32
		보 전 관 리 지 역	계	감) 2,959	109,054,635	7.45
		생 산 관 리 지 역	계	감) 64,771	54,339,815	3.71
		계 획 관 리 지 역	계	감) 995,984	192,481,005	13.15
	농 림 지 역	계	감) 453	951,633,221	65.02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계	-	139,082,443	9.5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총괄 조서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21	9	8	4	8					
	일 반 미 관 지 구	6	6	-	-	-					
	최 고 고 도 지 구	12	3	8	1	-					
	개 발 진 흥 지 구	3	-	-	3	8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7	-	-	7	
도 시 지 역	4	-	-	4	-
비 도 시 지 역	3	-	-	3	8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라.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총괄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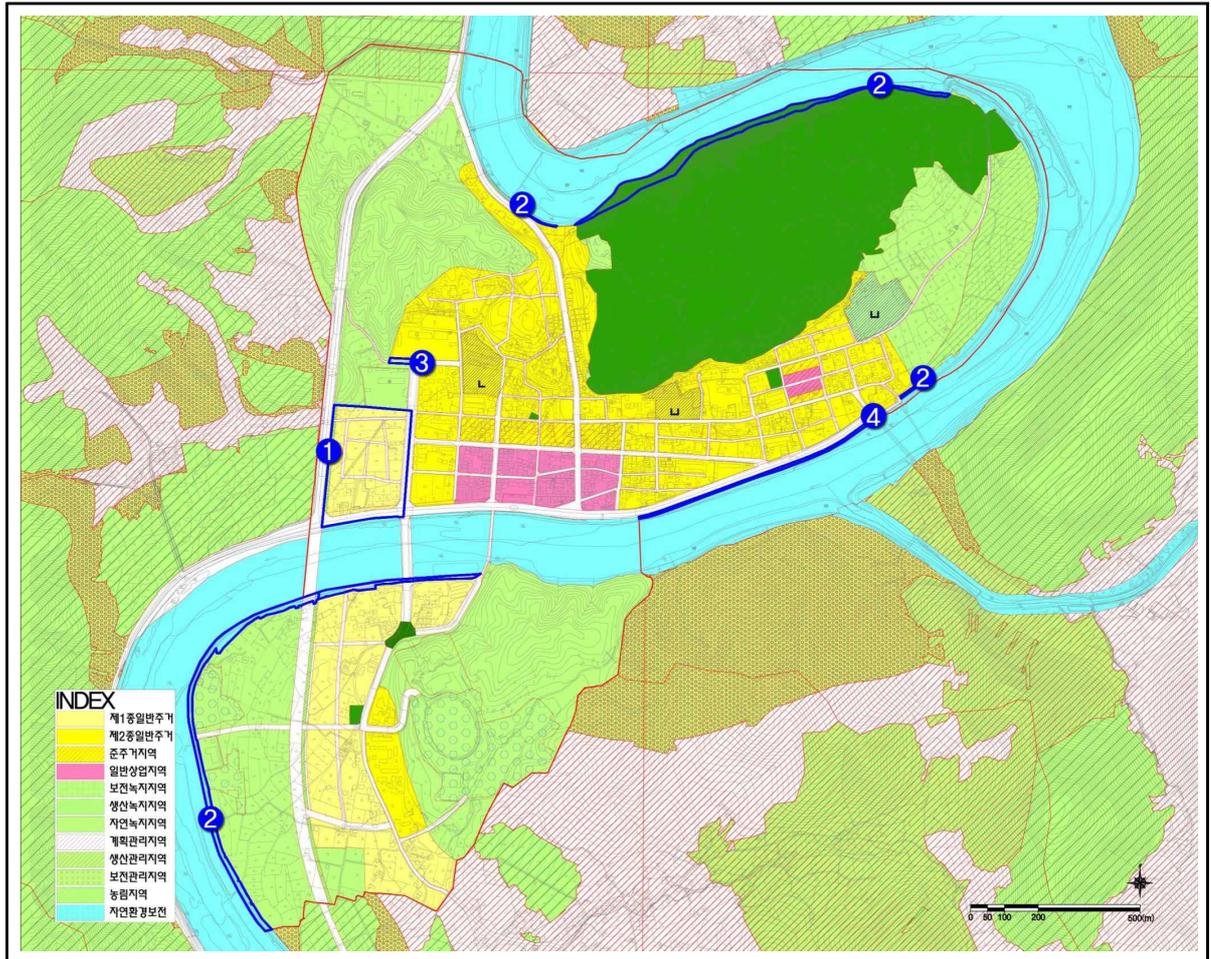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 계 획 시 설	440	162	161	117	48
교 통 시 설	351	141	130	80	17
도 로	333	127	130	76	15
대 로	4	-	3	1	-
중 로	22	5	14	3	-
소 로	307	122	113	72	15
주 차 장	18	14	-	4	2
공 간 시 설	53	11	16	26	15
광 장	-	-	-	-	1
공 원	27	10	9	8	13
근 린 공 원	6	-	4	2	-
어 린 이 공 원	12	4	2	6	11
소 공 원	9	6	3	-	2
녹 지	16	1	6	9	1
완 충 녹 지	13	-	5	8	1
경 관 녹 지	3	1	1	1	-
공 공 공 지	10	-	1	9	-
유 통 및 공 급 시 설	1	-	1	-	-
수 도 공 급 설 비	1	-	1	-	-
공공·문화체육시설	20	8	5	7	15
학 교	3	-	2	1	7
공공청사	11	6	-	5	5
문화시설	-	-	-	-	1
체육시설	6	2	3	1	1
사회복지시설	-	-	-	-	1
방재시설	10	1	7	2	-
하천	9	-	7	2	-
유수지	1	1	-	-	-
환경기초시설	5	1	2	2	1
하수종말처리장	2	1	1	-	-
폐기물처리시설	3	-	1	2	1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 가각변경 등)임

5. 도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평창도시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 지역	합	계	3,526,500	감)	5,402	3,521,098	100.0		
	주거 지역	계	852,165	증)	71,043	923,208	26.2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810,170	증)	72,043	881,213	25.0	
			제1종	245,000	증)	72,879	317,879	9.0	
			제2종	565,170	감)	1,836	563,334	16.0	
		준 주 거 지 역	41,995	-	-	41,995	1.2		
	상업 지역	계	85,185	-	-	85,185	2.4		
		일반상업지역	76,315	-	-	76,315	2.2		
		근린상업지역	8,870	-	-	8,870	0.3		
	녹지 지역	계	2,589,150	감)	76,445	2,512,705	71.4		
		보전녹지지역	435,500	증)	45,750	481,250	13.7		
		생산녹지지역	189,447	-	-	189,447	5.4		
		자연녹지지역	1,964,203	감)	122,195	1,842,008	52.3		

※ 감액된 면적은 불합리한 도시지역 경계 조정에 따른 축소 면적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	78,555	200	▶ 평창도시지역내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020 평창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3단계) 용도지역 구체화
2	합계		50,812	80	▶ 평창강 하천정비기본계획 (2012.06)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	보전녹지지역	44,576		
	제2종일반주거		555		
	자연녹지지역		5,681		
3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1,142	100	▶ 기존 군계획시설 도로의 중심선으로 결정되었으나 해당시설이 폐지되었음에 따라 용도지역의 합리화를 위하여 경계조정
4	합계		5,402	80	▶ 대로3-1호선 변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지역 경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5,062		
	자연녹지지역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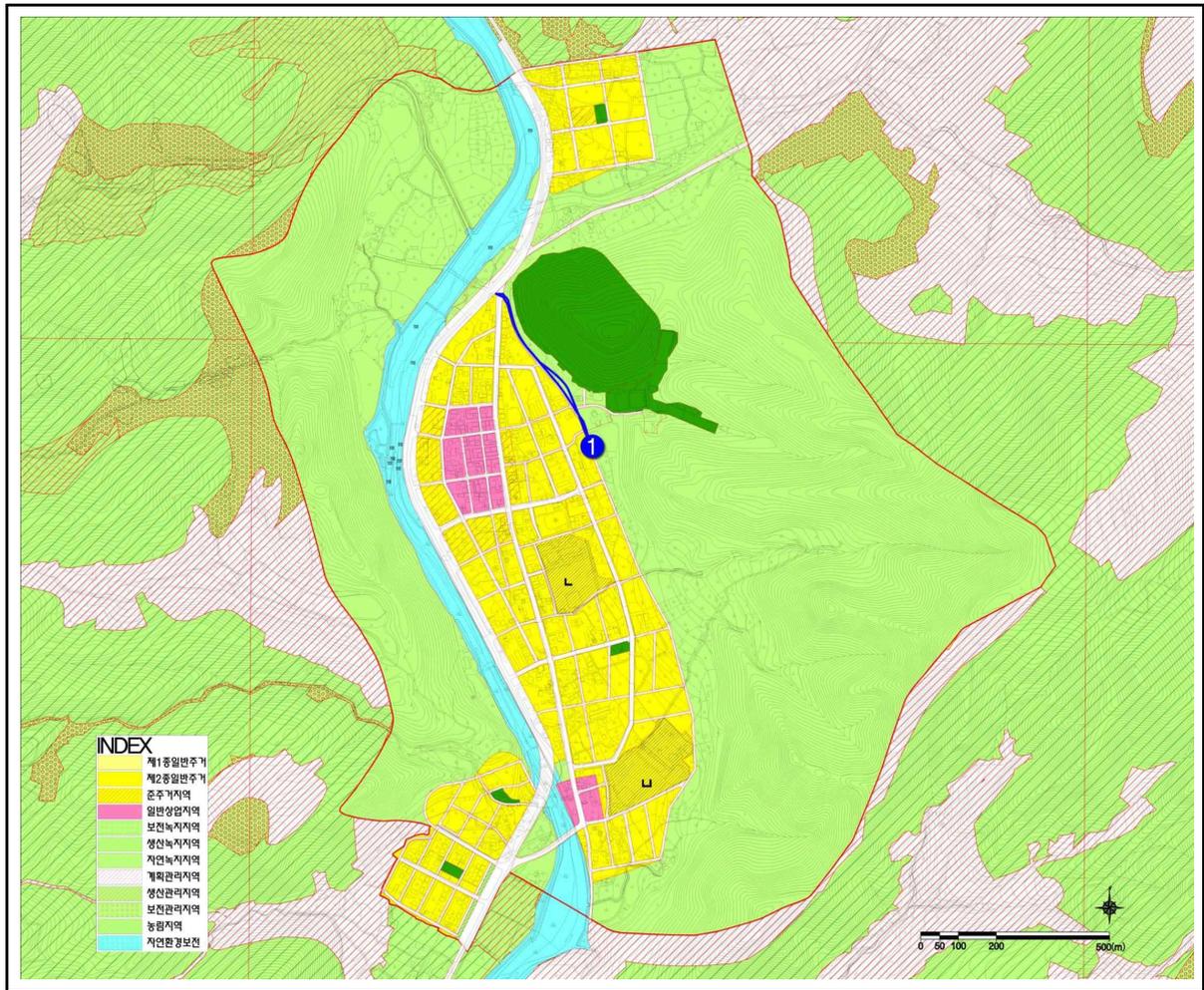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 계획 시설	34	13	17	4	2
교통 시설	23	9	13	1	-
도 로	20	6	13	1	-
중 로	1	-	1	-	-
소 로	19	6	12	1	-
주 차 장	3	3	-	-	-
공간 시설	6	1	3	2	2
공 원	3	1	1	1	2
군 린 공 원	1	-	1	-	-
어 린 이 공 원	1	-	-	1	2
소 공 원	1	1	-	-	-
녹 지	1	-	1	-	-
완 총 녹 지	1	-	1	-	-
공 공 공 지	2	-	1	1	-
공공·문화체육시설	5	3	1	1	-
공 공 청 사	1	1	-	-	-
체 육 시 설	4	2	1	1	-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시설번호 변경)임

나. 대화도시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 지역	합	계	3,297,341	감) 780	3,297,341	100.0		
	주거 지역	계	687,286	감) 780	686,506	20.8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640,106	780	639,326	19.4	
			제1종	-	-	-	-	
			제2종	640,106	감) 780	639,326	19.4	
			준주거지역	47,180	-	47,180	1.4	
	상업 지역	계	48,770	-	48,770	1.5		
		일반상업지역	48,770	-	48,770	1.5		
		근린상업지역	-	-	-	-		
	녹지 지역	계	2,561,285	증) 780	2,562,065	77.7		
		보전녹지지역	163,600	-	163,600	5.0		
		생산녹지지역	10,333	-	10,333	0.3		
자연녹지지역		2,387,352	증) 780	2,388,132	72.4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합계		2,340		▶ 소로3-22호선 선형변경 (설계노선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1,560	100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	78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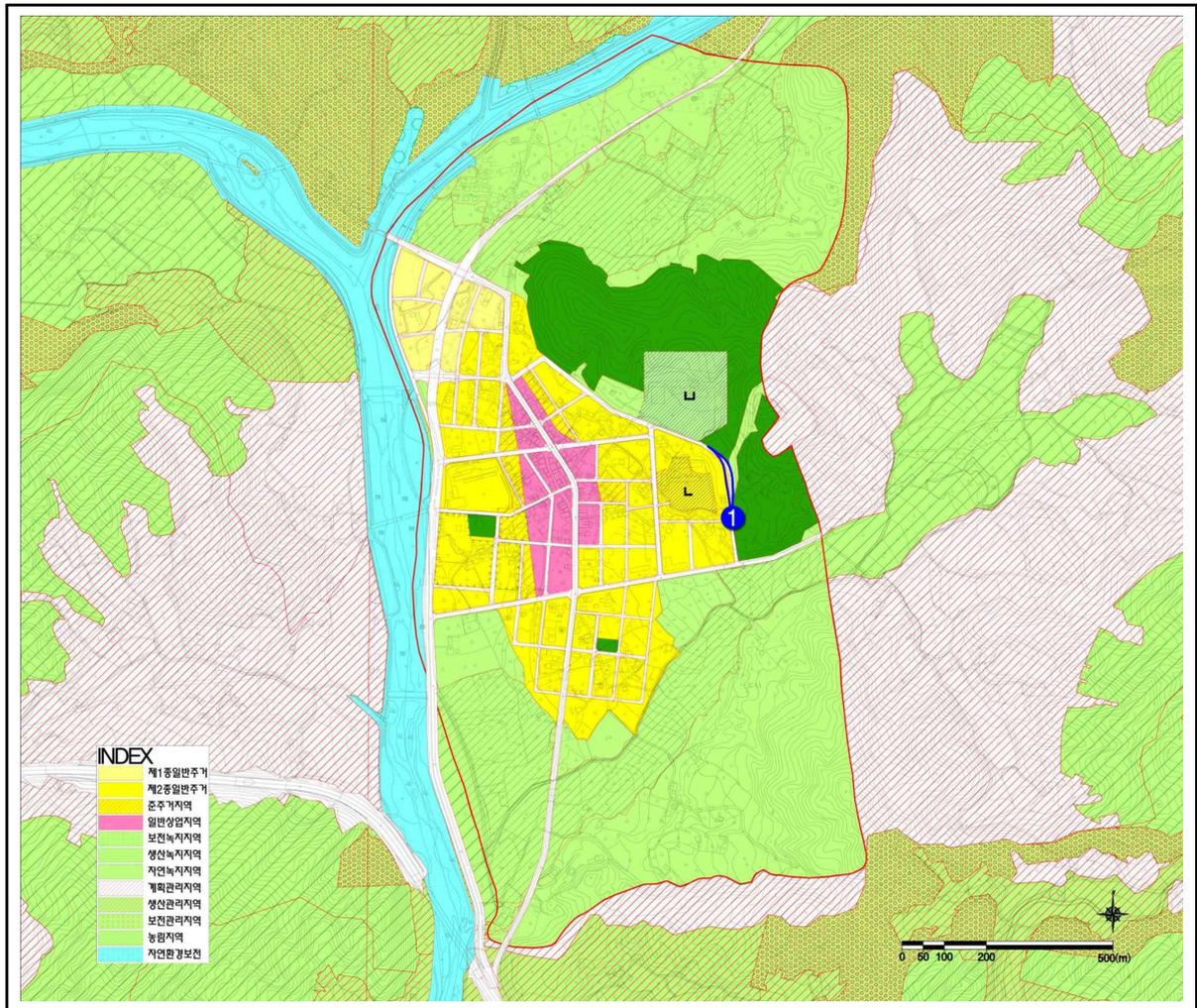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 계획 시설	25	7	17	1	3
교통 시설	20	5	14	1	-
도로	18	3	14	1	-
소로	18	3	14	1	-
주차장	2	2	-	-	-
공간 시설	3	1	2	-	3
공원	2	-	2	-	3
근린공원	1	-	1	-	-
어린이공원	1	-	1	-	3
녹지	1	1	-	-	-
경관녹지	1	1	-	-	-
공공·문화체육시설	2	1	1	-	-
학교	1	-	1	-	-
공공청사	1	1	-	-	-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시설번호 변경)임

다. 봉평도시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 지역	합	계	1,862,000	-	1,862,000	100.0		
	주거 지역	계	423,060	증) 1,640	424,700	22.8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397,860	증) 1,640	399,500	21.5	
			제1종	57,580	-	57,580	3.1	
			제2종	340,280	증) 1,640	341,920	18.4	
		준 주 거 지 역	25,200	-	25,200	1.4		
	상업 지역	계	65,800	-	65,800	3.5		
		일반상업지역	65,800	-	65,800	3.5		
		근린상업지역	-	-	-	-		
	녹지 지역	계	1,373,140	감) 1,640	1,371,500	73.7		
		보전녹지지역	54,600	-	54,600	2.9		
		생산녹지지역	474,845	-	474,845	25.5		
자연녹지지역		843,695	감) 1,640	842,055	45.2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	1,640	250	▶ 소로2-12호선 선형변경 (현황도로 활용)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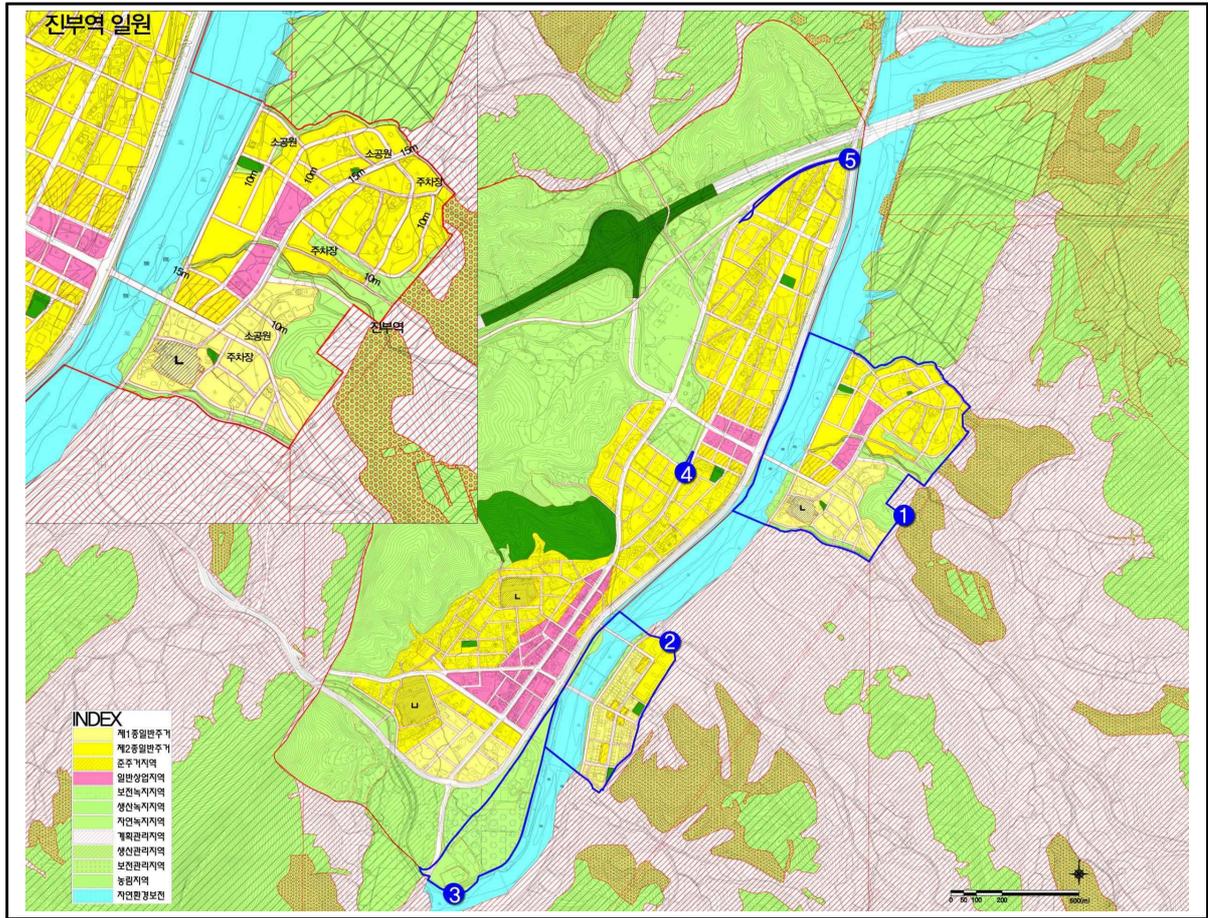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 계획 시설	4	1	3	-	1
교통 시설	1	-	1	-	-
도	1	-	1	-	-
소	1	-	1	-	-
공간 시설	1	-	1	-	1
공원	1	-	1	-	1
근린 공원	1	-	1	-	-
어린이 공원	-	-	-	-	1
유통 및 공급 시설	1	-	1	-	-
수도 공급 설비	1	-	1	-	-
공공·문화체육 시설	1	1	-	-	-
공공 청사	1	1	-	-	-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시설번호 변경)임

라. 진부도시지역

○ 금회 진부역 일원, 송정택지, 진부체육시설 일원을 진부도시지역으로 편입



1) 용도지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 지역	합	계	3,471,000	증) 777,231	4,248,231	100.0	100.0	
	주거 지역	계	1,102,960	증) 366,717	1,469,677	34.6	34.6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1,042,040	증) 341,491	1,383,531	32.6	32.6
			제1종	75,000	증) 158,107	233,107	5.5	5.5
			제2종	967,040	증) 183,384	1,150,424	27.1	27.1
			준주거지역	60,920	증) 25,226	86,146	2.0	2.0
	상업 지역	계	157,760	증) 19,724	177,484	4.2	4.2	
		일반상업지역	157,760	증) 19,724	177,484	4.2	4.2	
		근린상업지역	-	-	-	-	-	
	녹지 지역	계	2,210,280	증) 390,790	2,601,070	61.2	61.2	
		보전녹지지역	24,000	증) 220,488	244,488	5.8	5.8	
		생산녹지지역	71,247	-	71,247	1.7	1.7	
자연녹지지역		2,115,033	증) 170,302	2,285,335	53.8	53.8		
비 도시 지역	합	계	777,231	감) 776,231	-	-	도시지역 확장	
	관리 지역	계	776,778	감) 776,778	-	-		
		보전관리지역	8,361	감) 8,361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768,417	감) 768,417	-	-		
	농림지역	453	감) 453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합계		468,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강릉간 철도 사업에 의한 평창역 신설 ▶ 2020평창군 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3단계)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구체화 ▶ 도시지역 편입(진부역 일원)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A=2,739㎡)	제2종일반주거	350	250	
		자연녹지지역	2,389	100	
	계획관리지역 (A=465,986㎡)	제1종일반주거	90,770	200	
		제2종일반주거	156,582	250	
		준주거지역	14,145	500	
		일반상업지역	19,724	1,300	
		보전녹지지역	138,596	80	
자연녹지지역	46,169	100			
2	합계		193,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완료된 송정택지(개발진흥지구)의 용도지역 현실화 ▶ 2020 평창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 도시지역 편입(송정택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	67,337	200	
		제2종일반주거	25,472	250	
		준주거지역	11,081	500	
		보전녹지지역	81,892	80	
		자연녹지지역	7,618	100	
3	합계		115,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변경되는 체육시설 및 주변지역 도시지역 편입 ▶ 하천(오대천) 경계로 진부 도시지역 경계 설정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5,622	100	
	계획관리지역		109,031		
	농림지역		453		
4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794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2-2호선 선형변경(소하천과 중복 지정된 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
5	합계		3,148		▶ 국도6호선 사업으로 인하여 변경·결정된 도로로 인한 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687	100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	2,461	250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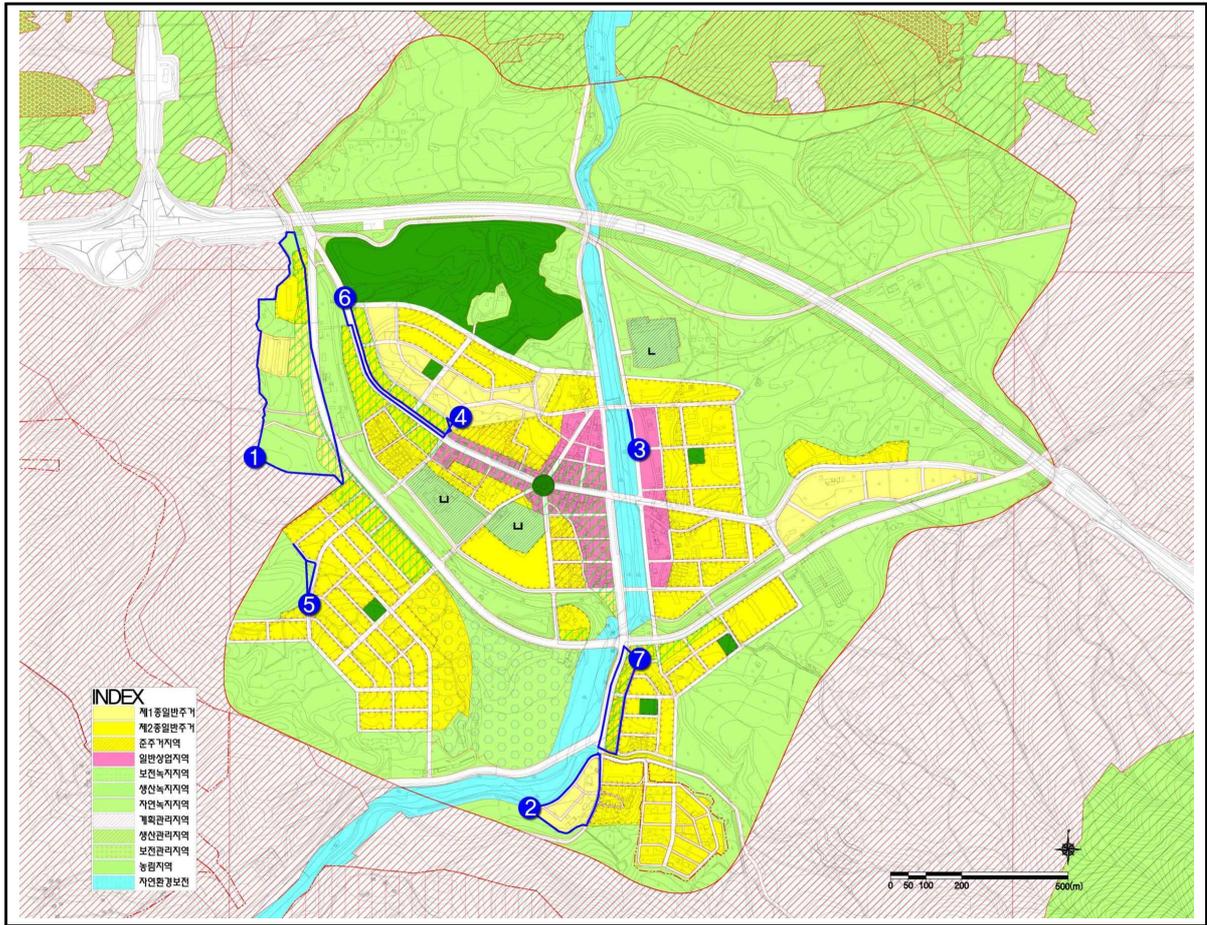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계획시설	91	55	32	4	3
교통시설	79	49	28	2	-
도	76	46	28	2	-
중	4	-	4	-	-
소	72	46	24	2	-
주차장	3	3	-	-	-
공간시설	9	5	2	2	3
공원	6	5	1	-	3
근린공원	1	-	1	-	-
어린이공원	-	-	-	-	3
소공원	5	5	-	-	-
녹지	1	-	1	-	-
완충녹지	1	-	1	-	-
공공공지	2	-	-	2	-
공공·문화체육시설	3	1	2	-	-
학교	1	-	1	-	-
공공청사	1	1	-	-	-
체육시설	1	-	1	-	-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시설번호 변경)임

마. 횡계도시지역

○ 금회 대관령한우타운 일원을 횡계도시지역으로 편입



1) 용도지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 지역	합	계	3,788,000	증) 95,581	3,883,581	100.0		
	주거 지역	계	1,014,590	증) 64,718	1,079,308	27.8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983,790	증) 51,030	1,034,820	26.7	
			제1종	136,021	증) 41,561	177,582	4.6	
			제2종	847,769	증) 9,469	857,238	22.1	
			준주거지역	30,800	증) 13,688	44,488	1.1	
	상업 지역	계	133,370	증) 266	133,636	3.4		
		일반상업지역	133,370	증) 266	133,636	3.4		
		근린상업지역	-	-	-	-		
	녹지 지역	계	2,640,040	증) 30,597	2,670,637	68.8		
보전녹지지역		120,700	감) 214	120,486	3.1			
생산녹지지역		125,822		125,822	3.2			
자연녹지지역		2,393,518	증) 30,811	2,424,329	62.4			
비 도시 지역	합	계	95,581	감) 95,581	-	-	도시지역 확장	
	관리 지역	계	95,581	감) 95,581	-	-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95,581	감) 95,581	-	-		
농림지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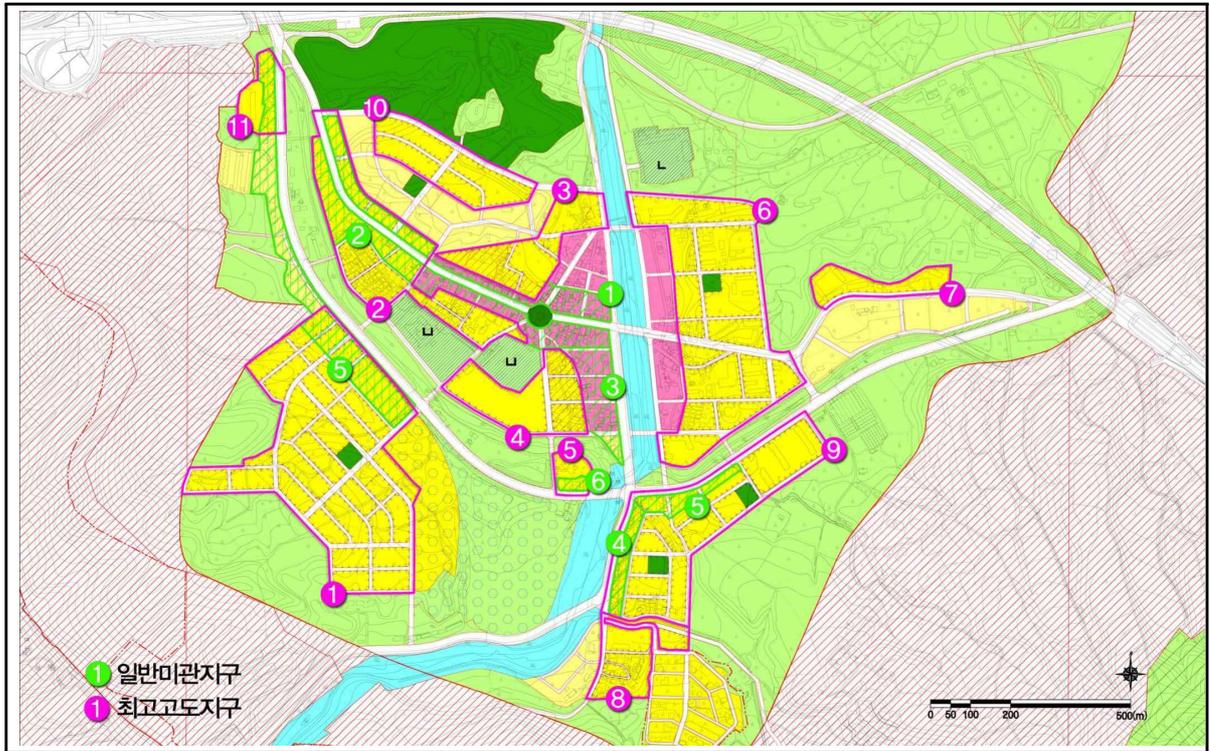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합계		108,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및 시가화예정용지(3단계)의 용도지역 구체화 ▶ 도시지역 편입(대관령 한우타운 일원)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A=12,937m ²)	제1종일반주거	7,222	200	
		제2종일반주거	5,715	250	
	계획관리지역 (A=95,581m ²)	제1종일반주거	34,503	200	
		제2종일반주거	12,976	250	
자연녹지지역		48,102	100		
2	합계		18,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계도시지역내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020 평창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3단계) 용도지역 구체화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	2,850	80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	16,112	200	
3	보전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214	1,300	▶ 종로3-1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
4	합계		258		▶ 종로3-2호선 및 주변 접속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185	250	
	제2종일반주거	제1종일반주거	21	200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52	1,300	
5	합계		1,478		▶ 종로3-5호선 선형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	39	250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1,439	100	
6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	5,754	250	▶ 기존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에 대한 조정
7	보전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3,688	1,300	▶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변경

3)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용도지구		18	9	8	1	-
	최고고도지구	12	3	8	1	-
	일반미관지구	6	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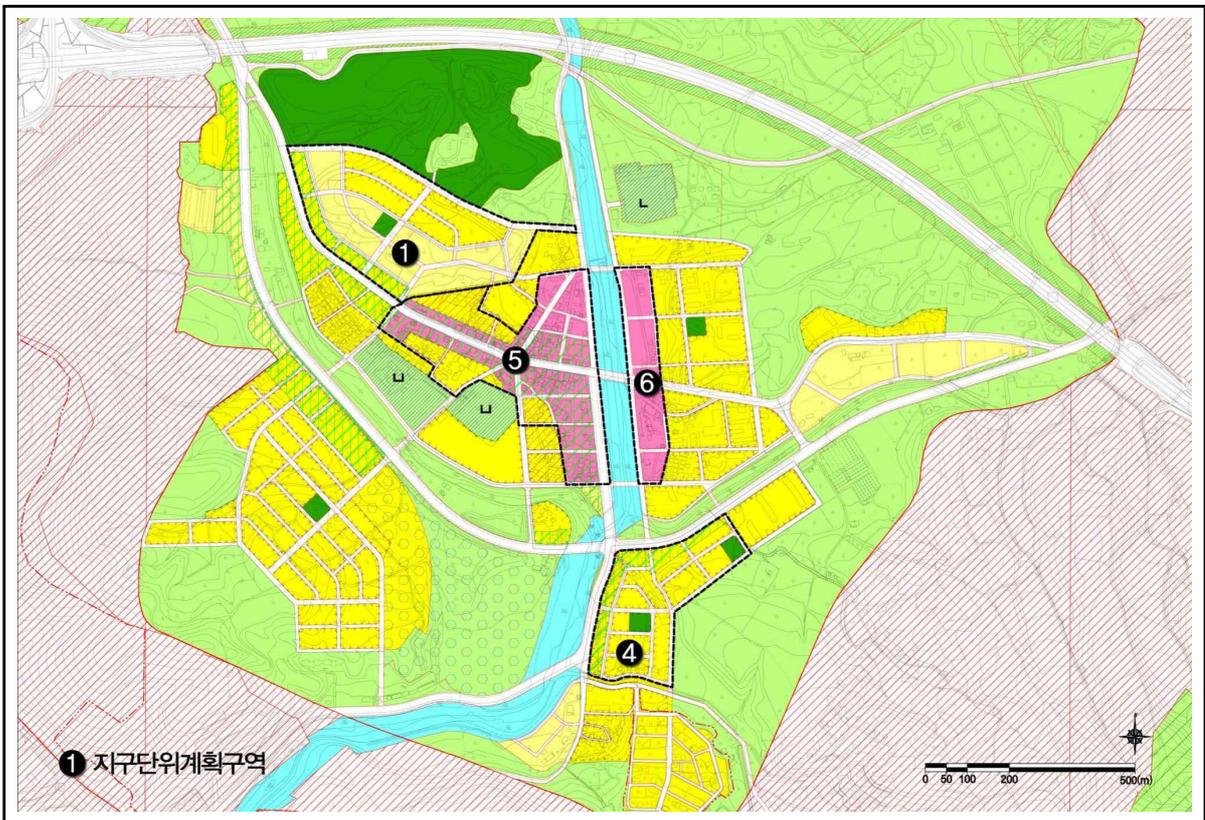
4)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 최고고도지구

구분	번호	지구명	고도제한내용		면적 (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84,960	777,926	
변경	1	원종장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218,430	209,111	▶ 과도한 규제에 의한 개발 의욕 저하 및 도시미관의 지속적 침체에 따른 규제 완화 ▶ 중앙, 황계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경계조정
변경	2	황계2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49,620	88,409	
변경	3	황계3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25,960	41,361	
변경	4	황계4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27,250	45,160	
폐지	5	황계5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	12,790	-	▶ 황계4지구와 통합에 따른 폐지
변경	5	황계5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9,510	9,510	▶ 과도한 규제에 의한 개발 의욕 저하 및 도시미관의 지속적 침체에 따른 규제 완화 ▶ 규제 완화로 인한 일부 경계조정
변경	6	황계6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89,430	154,510	
변경	7	황계7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20,900	20,900	
변경	8	황계8지구	5층이하로써 20m이하	8층이하로써 28m이하	31,070	31,070	
신설	9	황계9지구	-	8층이하로써 28m이하	-	112,512	▶ 황계리, 황계5리 지구 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신설
신설	10	황계10지구	-	8층이하로써 28m이하	-	46,692	
신설	11	황계11지구	-	8층이하로써 28m이하	-	18,691	▶ 신규도시지역 확장지역에 대한 계획적관리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신설

○ 일반미관지구

구분	번호	지구명	면적(㎡)	연장(m)	폭원(m)	결정(변경)사유
합계			173,681	-	-	
신설	1	횡계 미관지구1	32,83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횡계 시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미관지구 지정
신설	2	횡계 미관지구2	42,737	-	-	
신설	3	횡계 미관지구3	21,497	-	-	
신설	4	횡계 미관지구4	8,488	-	-	
신설	5	횡계 미관지구5	65,480	-	-	▶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주요 간선인 대로3-3호선(올림픽로)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미관 지구 신설
신설	6	횡계 미관지구6	2,640	-	-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4	-	-	4	-
도시지역	4	-	-	4	-

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번호	구역명	면적 (m ²)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합계			388,650	-	
폐지	1	횡계1리구역	135,070	-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과도한 규제에 인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금회 구역해제
폐지	4	횡계5리구역	78,380	-	
폐지	5	중앙구역	135,200	-	▶ 도시설계에 의해 결정되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금회 구역해제
폐지	6	횡계4리구역	40,000	-	

7)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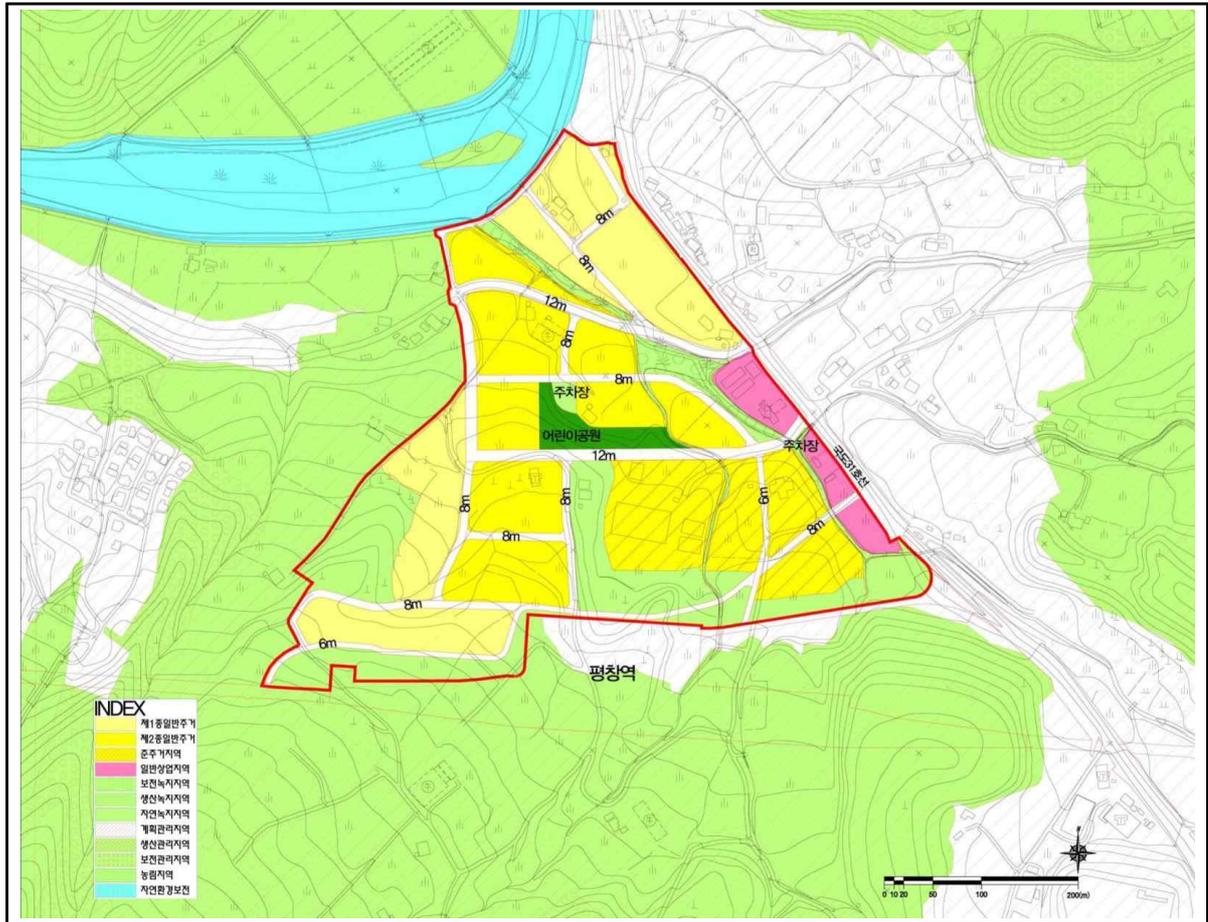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 계획 시설	153	60	21	72	4
교통 시설	138	56	18	64	2
도	130	52	18	60	2
대로	3	-	2	1	-
중로	11	3	5	3	-
소로	116	49	11	56	2
주차장	8	4	-	4	-
공간 시설	13	3	2	8	2
공원	10	3	-	7	2
근린공원	2	-	-	2	-
어린이공원	8	3	-	5	2
녹지	3	-	2	1	-
완충녹지	1	-	1	-	-
경관녹지	2	-	1	1	-
공공·문화체육시설	2	1	1	-	-
공공청사	1	1	-	-	-
체육시설	1	-	1	-	-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가각부, 시설번호 변경)임

바. 평창역 일원

○ 금회 용평면 재산리의 평창역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신설



1) 용도지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 지역	합	계	- (증)	196,757	196,757	100.0		
	주거 지역	계	- (증)	135,611	135,611	68.9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 (증)	105,743	105,743	53.7	
			제1종	- (증)	49,980	49,980	25.4	
		제2종	- (증)	55,763	55,763	28.3		
		준 주 거 지 역	- (증)	29,868	29,868	15.2		
	상업 지역	계	- (증)	8,351	8,351	4.2		
		일반상업지역	- (증)	8,351	8,351	4.2		
		근린상업지역	-	-	-	0.0		
	녹지 지역	계	- (증)	52,795	52,795	26.8		
보전녹지지역		- (증)	8,173	8,173	4.2			
생산녹지지역		-	-	-	0.0			
자연녹지지역		- (증)	44,622	44,622	22.7			
비 도시 지역	합	계	196,757 (감)	196,757	-	-	도시지역 확장	
	관리 지역	계	196,757 (감)	196,757	-	-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64,771 (감)	64,771	-	-		
		계획관리지역	131,986 (감)	131,986	-	-		
농림지역	-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합계		196,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강릉간 철도 사업에 의한 평창역 신설 ▶ 2020평창군 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3단계)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구체화 ▶ 도시지역 편입(평창역 일원)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생산관리지역 (A=64,771m ²)	제1종일반주거	23,869	200	
		제2종일반주거	22,491	250	
		보전녹지지역	98	80	
		자연녹지지역	18,313	100	
	계획관리지역 (A=131,986m ²)	제1종일반주거	26,111	200	
		제2종일반주거	33,272	250	
		준주거지역	29,868	500	
		일반상업지역	8,351	1,300	
		보전녹지지역	8,075	80	
자연녹지지역		26,309	100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 계획 시설	17	17	-	-	-
교통 시설	16	16	-	-	-
도로	14	14	-	-	-
중로	2	2	-	-	-
소로	12	12	-	-	-
주차장	2	2	-	-	-
공간 시설	1	1	-	-	-
공원	1	1	-	-	-
어린이공원	1	1	-	-	-

6. 비도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미탄면 창리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1		-		-		-		1	
	개	1		-		-		-		1	
	발										
	진										
	흥										
	지										
	구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1		-		-		-		1	
	단										
	위										
	계										
	획										
	구										
	역										
비	도	1		-		-		-		1	
	시										
	지										
	역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17		1		16		-		6	
	화										
	학										
	시										
	설										
교	통	15		1		14		-		-	
	도	15		1		14		-		-	
	로	1		-		1		-		-	
	로	14		1		13		-		-	
공	간	1		-		1		-		1	
	장	-		-		-		-		1	
	지	1		-		1		-		-	
	지	1		-		1		-		-	
	총										
	녹										
	지										
공	공	-		-		-		-		5	
	화										
	체										
	육										
	시										
	설										
	사										
	회										
	복										
	지										
	시										
	설										
환	경	1		-		1		-		-	
	기										
	초										
	시										
	설										
	폐	1		-		1		-		-	
	기										
	물										
	처										
	리										
	시										
	설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나. 방림면 계촌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1	-	-	-	-	-	1	
	개	발	진	흥	지	구	1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1	-	-	-	1
	비	도	시	지	역	1	-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획	시	설	4	-	2	2	2	3		
교	통	시	설	2	-	2	2	-	-	-		
	도	로	2	-	2	2	-	-	-	-		
	소	로	2	-	2	2	-	-	-	-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2	-	2	3
	학	교	-	-	-	-	-	-	-	2		
	공	공	청	사	2	-	-	-	2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다. 방림면 방림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1	-	-	-	1
개 발 진 흥 지 구	1	-	-	-	1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1	-	-	-	1
비 도 시 지 역	1	-	-	-	1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획 시 설	10	1	4	5	4
교 통 시 설	7	1	4	2	-
도 로	7	1	4	2	-
소 로	7	1	4	2	-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3	-	-	3	4
학 교	-	-	-	-	1
공 공 청 사	3	-	-	3	3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라. 봉평면 면온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용도지구	1	-	-	-	1
개발진흥지구	1	-	-	-	1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1	-	-	-	1
비도시지역	1	-	-	-	1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비고
군계획시설	21	-	15	6	1
교통시설	19	-	14	5	-
도로	19	-	14	5	-
중로	1	-	1	-	-
소로	18	-	13	5	-
공간시설	1	-	1	-	-
공원	1	-	1	-	-
소공원	1	-	1	-	-
공공·문화체육시설	-	-	-	-	1
학교	-	-	-	-	1
환경기초시설	1	-	-	1	-
폐기물처리시설	1	-	-	1	-

※ 비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마. 봉평면 무이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1	-	-	-	-	-	1	
	개	발	진	흥	지	구	1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1	-	-	-	1
	비	도	시	지	역	1	-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획	시	설	13	-	11	2	-	12	
교	통	시	설	9	-	9	-	-	-	12	
	도	로	9	-	9	-	-	-	-	10	
	대	로	1	-	1	-	-	-	-	-	
	중	로	2	-	2	-	-	-	-	-	
	소	로	6	-	6	-	-	-	-	10	
	주	차	장	-	-	-	-	-	-	2	
공	간	시	설	3	-	2	1	-	-	-	
	공	원	1	-	1	-	-	-	-	-	
	소	공	원	1	-	1	-	-	-	-	
	녹	지	2	-	1	1	-	1	-	-	
	완	충	녹	지	2	-	1	1	-	-	
환	경	기	초	시	설	1	-	-	1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1	-	-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 가각부 변경)임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바. 봉평면 무이화암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1	-	-	-	-	-	1	
	개	발	진	흥	지	구	1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1	-	-	-	1
	비	도	시	지	역	1	-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획	시	설	17	-	-	-	17	5	
교	통	시	설	2	-	-	-	-	2	-	
	도	로	2	-	-	-	-	-	2	-	
	소	로	2	-	-	-	-	-	2	-	
공	간	시	설	13	-	-	-	-	13	3	
	공	원	-	-	-	-	-	-	-	2	
	소	공	원	-	-	-	-	-	-	2	
	녹	지	7	-	-	-	-	-	7	1	
	완	충	녹	지	7	-	-	-	7	1	
	공	공	공	지	6	-	-	-	6	-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	-	1
	문	화	시	설	-	-	-	-	-	1	
방	재	시	설	2	-	-	-	-	2	-	
	하	천	2	-	-	-	-	-	2	-	
환	경	기	초	시	설	-	-	-	-	-	1
	폐	기	물	처	리	시	설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사. 봉평면 평촌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1	-	-	-	-	-	1	
	개	발	진	흥	지	구	1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1	-	-	1
	비	도	시	지	역	1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아. 용평면 장평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1	-	-	-	-	-	1	
	개	발	진	흥	지	구	1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1	-	-	-	1
	비	도	시	지	역	1	-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획	시	설	3	-	3	-	-	2	
교	통	시	설	2	-	2	-	-	-	2	
	도	로	2	-	2	-	-	-	-	2	
	소	로	2	-	2	-	-	-	-	2	
공	간	시	설	1	-	1	-	-	-	-	
	공	원	1	-	1	-	-	-	-	-	
	소	공	원	1	-	1	-	-	-	-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 가각부 변경)임

자. 대관령면 차항지구(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1	-	-	-	-	-	1	
	개	발	진	흥	지	구	1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1	-	-	-	1
	비	도	시	지	역	1	-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구적오차)임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획	시	설	17	2	12	3	2		
교	통	시	설	16	2	11	3	1			
	도	로	16	2	11	3	1				
	소	로	16	2	11	3	1				
공	간	시	설	1	-	1	-	-			
	공	원	1	-	1	-	-				
	어	린	이	공	원	1	-	-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	-	1
	학	교	-	-	-	-	-	-	1		

※ 비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임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내용

-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현행법상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차. 기타 비도시지역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용	도	지	구	3	-	-	-	3	-	-	-
	개	발	진	흥	지	구	3	-	-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 개발진흥지구

구분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면적 (m ²)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합계				212,355	-	
폐지	11	동계 대회숙소 (96 '아시안게임)	주거 개발진흥 지구	52,278	-	▶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별도사업 진행이 없음에 따른 개발진흥 지구 금회 폐지
폐지	12	송정 택지	주거 개발진흥 지구	99,000	-	▶ 송정택지의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폐지
폐지	13	동원 생수공장	산업·유통 개발진흥 지구	61,077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폐지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3	-	-	-
비	도	시	지	역	3	-	-	3	-	-	-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면적 (m ²)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합계				212,355	-	
폐지	1	동계 대회숙소 (96 '아시안게임)	주거형	52,278	-	▶ 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 폐지
폐지	1	송정택지	주거형	99,000	-	
폐지	1	동원 생수공장	산업형	61,0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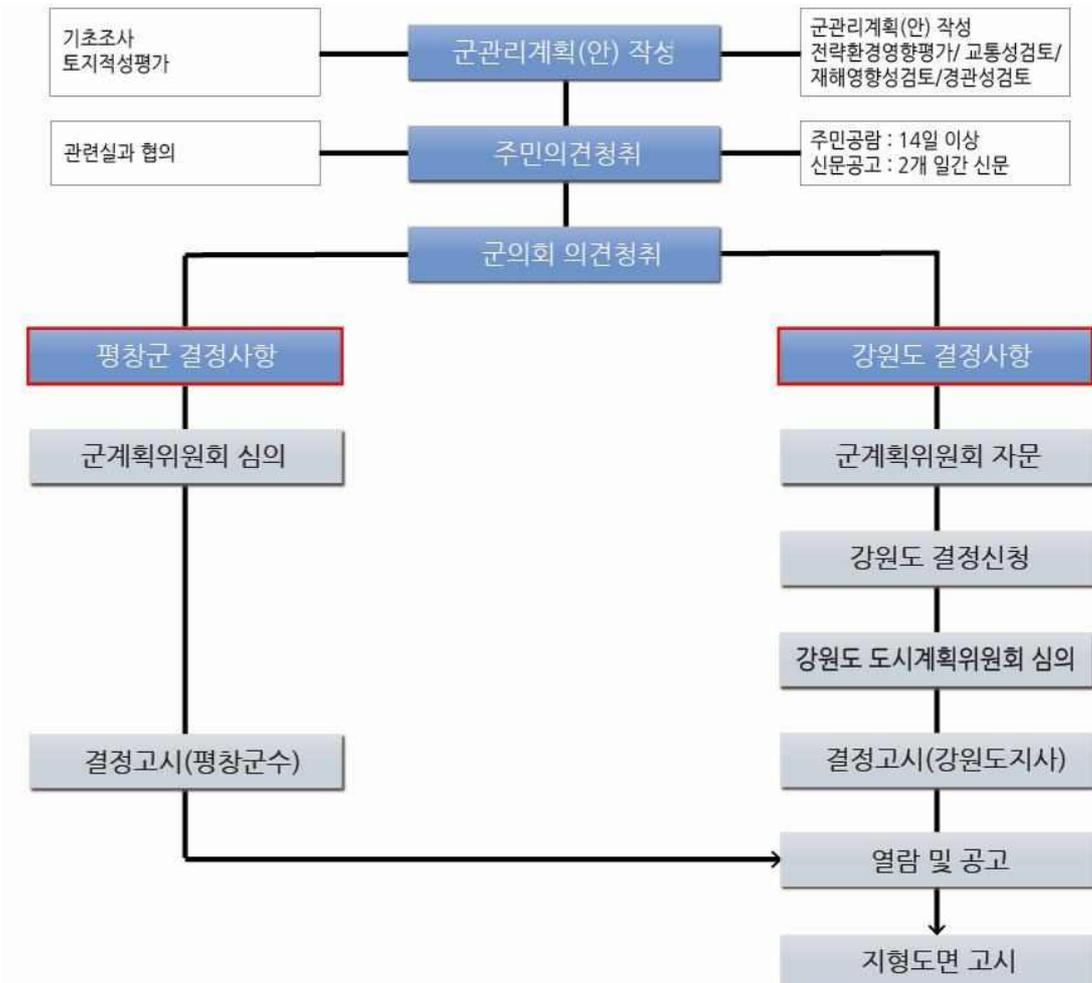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신	설	변	경	폐	지	비	고
군	계	14	5	8	1	-	-	-	-	-	-
교	통	2	2	-	-	-	-	-	-	-	-
	도	2	2	-	-	-	-	-	-	-	-
	소	2	2	-	-	-	-	-	-	-	-
공	공	2	1	-	-	-	-	1	-	-	-
	학	1	-	-	-	-	-	1	-	-	-
	공	1	1	-	-	-	-	-	-	-	-
	청	1	1	-	-	-	-	-	-	-	-
방	재	8	1	7	-	-	-	-	-	-	-
	하	7	-	2	-	-	-	-	-	-	-
	유	1	1	-	-	-	-	-	-	-	-
	수	1	1	-	-	-	-	-	-	-	-
환	경	2	1	1	-	-	-	-	-	-	-
	기	2	1	1	-	-	-	-	-	-	-
	초	2	1	1	-	-	-	-	-	-	-
	시	2	1	1	-	-	-	-	-	-	-
	설	2	1	1	-	-	-	-	-	-	-
	하	2	1	1	-	-	-	-	-	-	-
	수	2	1	1	-	-	-	-	-	-	-
	종	2	1	1	-	-	-	-	-	-	-
	말	2	1	1	-	-	-	-	-	-	-
	처	2	1	1	-	-	-	-	-	-	-
	리	2	1	1	-	-	-	-	-	-	-
	장	2	1	1	-	-	-	-	-	-	-

7.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계획

가. 군관리계획 수립절차



나. 추진경위

- 2012. 04. 02 : 군관리계획 과업착수
- 2013. 04. 05 : 강원도 사전협의(1차)
- 2013. 05. 03 : 1차 주민설명회(2일간)
- 2013. 09. 16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전협의(알펜시아 리조트)
- 2013. 10. 02 : 평창교육지원청 사전협의(횡계도시지역내 학교 이전관련)
- 2013. 10. 11 : 2차 주민설명회(주민요청)
- 2013. 11. 25 : 용역중지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및 올림픽 개·폐회식 계획 확정 지연에 의해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 일시중지)
- 2014. 02. 12 : 강원도 사전협의(2차)
- 2014. 03. 25 ~ 04. 14 : 군관리계획 주민 공람·공고 및 3차 주민설명회

다. 향후일정계획

- 2014. 04 : 평창군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2014. 05 : 평창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14. 05 : 강원도 상정
- 2014. 06 : 강원도 및 관련부처 협의
- 2014. 07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9 : 강원도 승인·고시
- 2014. 11 : 지형도면 고시

관련법규 발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2.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5장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1-5-1-2.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예 2010년, 2015년)

1-5-1-3.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연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3.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